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 축 물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,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및 처리,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. 이에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,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(안 제21조제7항)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 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(안 제22조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6항제1호 중 “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관리자는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체공사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포함될 것
2.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

가. 제1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일 것
나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이 있을 것
다.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) ① ~ ⑤ (생략)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 8호나목 또는 <u>다목</u> 에 따른 특 수구조 건축물 2.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 축물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라목</u> -----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<u>⑦ 관리자는 둘 이상의 건축물 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 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제출 절 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</u>

을 요청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체공사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포함될 것

2.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

가. 제1호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일 것

나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자격이 있을 것

다.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

④ (생략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89